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8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 박희승 • 윤준병 • 한병도

정진욱 · 서영석 · 한민수

김한규 • 이성윤 • 김남희

박민규 · 김정호 · 임미애

김성환 · 백혜련 · 정성호

위성곤 · 김영호 · 서영교

소병훈 · 한정애 · 어기구

주철현 · 황명선 · 최기상

안규백 • 이수진 • 위성락

이춘석 · 김남근 · 박범계

신영대 · 신정훈 · 김 윤

임오경 · 서삼석 · 서미화

복기왕 • 민형배 • 정준호

박지원 · 이개호 · 김교흥

김준혁 · 김영배 · 임광현

안도걸 · 이광희 · 윤호중

전진숙 · 강득구 · 장종태

강준현 · 오세희 · 문진석

이원택 • 이재정 • 김태년

김민석 · 김 현 · 안태준

추미애 • 유후덕 의원

(62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.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,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.

뿐만 아니라 내과·외과·소아과·응급의학과·산부인과·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, 특히 응급, 심뇌혈관질환,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,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.

아울러 2003년 사스, 2009년 신종플루, 2015년 메르스, 2019년 코로 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, 지난 코 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 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.

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·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,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.

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.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함.

이에 「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 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1항제1호사목 신 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·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보 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	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
금산입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금산입특례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	
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	
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	
「법인세법」 제29조를 적용하	
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	
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	
사업(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	
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	
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	
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	
업만 해당한다)에서 발생한 소	
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	
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법인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사. 「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
	・운영에 관한 법률」에
	따른 공공보건의료대학 및
	<u>발전기금</u>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